

▣ 신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따뜻한 균형추’ 역할로 상생 뒷받침” 다짐

부위원장에 정재찬 전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



김동수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31일 김동수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정재찬 전 상임위원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동수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서 사무관부터 차관까지 지낸 전문 경제관료 출신으로, 실물경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사에 신중하면서 합리적이고 무난한 성품으로 정책조정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1955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나 덕수상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79년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경제기획원 예산실,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 경제협력국장 등을 역임해 국내경제정책 및 대외경제업무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1월 3일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상호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따뜻한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공정위는 시장질서는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왔지만, 현재 대내외적인 여건은 공정위의 역할과 관련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와 생산자는 어느 한쪽을 택하고 다른 한쪽을 버려야 하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궁극적으로 상생관계가 되도록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일방적인 규제와 보호의 관계를 지양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상호협력관계를 유도해야 된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이와 같은 균형감각 위에서 모든 이해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찬 부위원장

한편, 정재찬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은 행시 21회로, 기획원 예산실, 정책조정국을 거쳐 공정위에서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기획관리관, 기업협력단장, 카르텔조사단장 등을 지냈다.

고려대 경영대 출신으로 영국 쉘포드대학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소신 있고 조용한 선비형 관료로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정평이 나있다. 공직에 입문한 이래 공정거래 분야에서 외길을 걸어온 공무원으로, 공정거래 분야 중 소비자 보호와 기업 담합 등에 뛰어난 식견을 가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 1955년 충남 서천 출생 △ 덕수상고,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미국 하와이대학원 경제학(박사) △ 경제기획원 예산실 △ 미국 동서문화센터(EWC) 파견 △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물가정책과장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2급) △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기획재정부 차관보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한국수출입은행장

정지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프로필

△ 1956년 경북 문경 출생 △ 경북고, 고려대 경영학과(학사) △ 영국 쉐프턴대학교 경제학 석사과정 수료(1986) △ 경제기획원 예산실, 정책조정국 사무관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2과장, 공동행위과장, 소비자기획 과장, 심판관리3담당관, 경쟁촉진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기획관리관, 기업협력단장, 카르텔조사단장, 서울공정거래사무소장, 공정위 상임위원

▣ 공정위 사무처장에 한철수, 상임위원에 안영호 임명



한철수 사무처장



안영호 상임위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 신임 사무처장으로 한철수 전 소비자정책국장을, 그리고 상임위원에 안영호 전 시장감시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그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공정위의 요직을 두루 거쳐 1급 공무원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2002년에는 그 동안의 업무와 청렴한 공적을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한 처장은 지난해 3월 시장감시국장에 재직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 연세의료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제약회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행위를 적발해 5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가칭)'의 반장으로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의 물가 감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안영호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공정위 광주사무소장, 심판관리 1담당관, 시장감시국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대인관계가 좋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유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 앞으로 공정위에서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심판시 위원장, 부위원장, 비상임위원과 함께 사건을 판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인사·조직혁신안 전격 발표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을 위한 전열 정비 및 조직 쇄신 박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우선적 국정가치인 공정사회 구현과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1월 7일 전격적으로 인사·조직쇄신을 단행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인적 쇄신의 상징적 의미로 기수와 연공을 파괴하여 사무처장에 과감하게 젊은 국장을 발탁했다. 개방·공모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장을 전면 교체하고 유능하고 젊은 국·과장들을 주요보직에 전격 발탁해 최일선에 배치함으로써, 현장감과 속도감 있게 국가적 과제 수행에 전념토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장의 진두지휘 하에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핵심 과제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적 과제 달성에 전념하고, 일상적 업무는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 내 자체감찰반을 운영해 사건조사과정 등에서 기업과의 유착이나 불필요한 기업 부담 등을 감찰토록 하고, '옴부즈맨제도'를 전격 도입해 기업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면서 공명정대한 시장의 균형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대 국정현안과제의 하나인 물가상승률 3% 억제를 위해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TF에 속한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은 기존의 기능별 업무분장에서 벗어나 각국별로 주요 품목들을 분담해 해당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카르텔, 부당표시광고 등 모든 공정거래 및 소비자법령 위반행위를 종합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감시품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과 공산품을 비롯해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품목 등으로, 가격거품이 크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을 선정해 불공정행위 조사와 사회적 공론화 및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현재 기능별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을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장급 인사에 이어 1월 11일 2차로 과장급에 대한 인사혁신을 단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장급 인사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핵심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총괄과장들을 종전 부이사관 급에서 젊고 패기 있는 서기관급으로 발탁해 최일선에 배치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즉, 핵심 총괄과장을 행시 27회 내지 33회 기수에서 36회 기수 위주로 배치한 것.

또한 젊고 유능한 서기관들과 조사경험 등이 풍부한 서기관들을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발탁해, 가격감시기능을 총괄하는 부서와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부서에 신입과장으로 승진·배치했다. 마지막으로 내부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담당관실 내에 서기관급을 반장으로 하는 내부감찰반을 별도로 신설해 기업조사 등에 있어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공정사회 구현’ 뒷받침하는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동반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 회의실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4대 정책대응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강화 △ 소비자 권익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 등이다.

주요 업무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감시활동 및 법집행 강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 개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쟁촉진시책 강화를 위해 물가불안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감시 강화,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해 사업자간 가격경쟁 촉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 촉진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장치의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금융상품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 효율화, 헬스클럽이나 노인요양기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인터넷 사이버몰·온라인게임 등 개인정보 침해가 빈발하는 인터넷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 상조업, 다단계, 전자상거래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질서 확립에 나서게 된다.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협력사 대표, 관련 단체로 구성된 ‘동반성장추진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특허기술 표준화 과정의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 방지기준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기부금 제공에 관한 분야별 모범거래기준 보급, 중견·중소기업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확산하고, 국내외 카르텔 예방교육 등 기업의 국내외 경쟁법 위반 예방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정위의 업무보고 이후에는 중소기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 총 12명 참여한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거래관계 공정화’ 토론회도 개최됐다.

▣ 정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공정위는 물가불안품목 상시조사·유통·시장구조 개선 통해 가격인하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3일, 물가가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상 분위기를 억제시키고 물가불안 품목에 대해선 상시적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물가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원재료 구입부터 최종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중간단계에서 가격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유통 및 시장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과 신선·가공식품을 중심으로 100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일반에 상시적으로 공개해 판매업체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특정 품목의 가격 인상을 초래한 뒤 해당업체가 이에 동조해 가격 인상에 나서자 관련 품목이 편승 인상을 시도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사회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지금까지는 가격이 오른 뒤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제재했지만, 향후에는 가격 거품의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주력해 물가인상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물가불안품목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각종 가격동향자료와 통계청 및 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해 품목별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으로, 가격동향 감시대상품목은 주요 생필품 이외에 국제가격이 높은 품목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등 103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 우려가 있는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으로, 밀가루, 음료(두유 등),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주요 불안품목별로 가격,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의 업무관행도 바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담합이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최우선 업무로 처리하기로 해, 온라인 음악판매 요금담합 등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방침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을 선정해 2월부터 일제 계통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나서되, 제도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선과제로 선정해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1월부터 정유사와 주유소간 수직계열화한 유통구조가 기름값의 거품을 만든다고 판단해 석유산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불공정관행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전국 255개 생활 관련 정보를 올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추, 양파 등의 신선식품과 빵, 버터 등의 가공식품 등 주요 생활필수품 100개의 가격정보를 공개해 업체별, 판매점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 정부, '서민물가 안정대책' 후속조치 즉시 추진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결과 발표

정부는 1월 14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해 1월 13일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물가대책이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는 상반기 중에는 물가대책을 업무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키로 하고, 대책 추진 결과가 실제 물가안정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물가대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단기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경제대책회의 논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상품인 휘발유 가격은 이번에 철저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중심이 되어 기재부, 공정위, 전문가 등으로 특별 T/F를 구성해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유통구조 상의 문제 등을 점검해 수입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물가안정대책회의는 각 부처 '물가안정책임관'들이 직접 참석해 원칙적으로 매주 금요일에 진행할 계획이며, 물가안정대책회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월 1회 장관급 회의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서민생활 관련 가격불안품목 전면조사 착수

조사품목은 생필품 위주·밀가루, 음료, 치즈, 김치, 단무지 등 반찬류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 중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1월 10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 조사는 지난 7일 대대적인 혁신인사와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 구성 등 조직 정비 이후에 신속하게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한 첫 번째 조사다. 조사품목으로는 음식료, 식자재, 주방용품 등 주요 생필품 위주로, 구체적으로 밀가루, 두유·커피 등의 음료, 치즈, 김치, 단무지 등의 반찬류도 포함됐다.

시장기능의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려고 이번 전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 공정위는, 이번 전면 조사가 과거 1970~80년대 물가단속과 같은 가격의 직접 통제나 관리가 아니라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불법 인상을 방지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과 같은 물가불안시기에는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편승인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가격담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시·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새로운 문화, 현장의 동반성장 움직임 가시화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8일 개최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동반성장 대책의 추진상황과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제 동반성장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동반성장 대책 부문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9월말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정부 관계부처별로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대기업도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 중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등은 11월에 개정이 완료되어 이미 시행 중이다.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이 일정대로 수립되고 있고 대기업들의 동반성장에 대한 적극적 참여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중소·중견제조업 생산성 혁신방안'과 'QWL 밸리 조성계획'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대책이 수립됐다. 또한 동반성장 전담조직 구성과 동반성장위원회 출범과 동반성장지수 마련 등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

동반성장 실태조사 부문에 있어서는 현장의 중소기업이 실제 느끼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주관 하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6개 광역경제권 2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확산현황, 수·위탁거래 공정성 등에 대한 동반성장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 동반성장 확산 현황(동반성장 체감, 거래 공정성 향상) △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대금결제 등) △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의 관계 △ 기업간 협력 △ (전반적 체감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최근 2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 정도 동반성장 움직임이 나타나고 추진 모멘텀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세부분야별 조사를 살펴보면, 먼저 수·위탁거래 공정화와 관련하여 서면계약이 정착되고 있으며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납품단가 인하요구는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결제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업체 중 34.8%가 현금결제 비중이 상승했고 27.1%가 어음할인 기간이 단축됐다고 응답해, 현금결제 비중 및 어음지급기일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석유화학 업계가 11월 도입한 공급가격 예시제가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본격 도입 중이며, 철강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 인상 유예 및 공급가격 할인 프로그램도 조기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동반성장의 모멘텀을 살리고 본격적인 확산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 추진·평가 체계 구축과 중소기업과의 의사소통 확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2월 13일 출범할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추진동력 제공을 위해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심의·의결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에 대한 판단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행위 심사 시에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 개시 또는 사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 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 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원객체와의 거래로 인해 지원 주체에게 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 등이 발생하는 등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토록 했다.

공정위는 비록 사건 심사지침이기는 하지만, 사업자들이 거래 시에 참조하는 준거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물량 지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

소비자·판매원의 합리적 선택 지원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3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과거 법위반행위,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3년간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연간 단위로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원들이 특정 업체가 법위반 빈도가 잦은 업체인지 과거 법위반행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본금, 자산, 부채 등 다단계판매업자의 재무상태를 매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이 등록요건(5억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재무건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판매업체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등급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과징금 상한 위반금액의 5배로 높이고, 현금결제 우수업체 감경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현금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정과징금 한도를 상향했다.

즉, 범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의 조정과징금 상한을 범위반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고, 범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조정과징금 상한을 범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그리고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와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합리화했다.

현금성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을 폐지하고,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혜택도 축소한 것.

현금성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점 감경과 과징금 감경에서 중복적이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별점은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과징금 가중,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등의 기준이 되므로 별점 감경만으로도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또한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행위에 대해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하도급법 → 고시·지침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의결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사업연혁 등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3일 공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에 맞춰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가맹사업 연혁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추정치 포함) 기재 △ 가맹본부 상호,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등의 변경된 내역 기재 △ 가맹사업의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를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기재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시 기존 10개 미만이면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을 5개 미만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재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등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 영업 개시 이전 부담 항목에 개점행사비 추가 및 영업 중 부담 항목에 영업표지 변경으로 간판 등을 변경할 경우 비용 추가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광고비용 부담기준을 광고 목적(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별로 구분하는 등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내역을 구체화 하는 것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대체수단 제공 여부, 계약 지속 여부 등) △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내용(영업비밀의 범위 등) 등의 의무적인 가맹계약서 기재사항도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기타사항으로는 △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재고물품 처리비용 지원 여부 등) 등이 추가됐다.

☐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 행정예고

헬스클럽 해지시 위약금 10% 이내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 가운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많은 5개 업종인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을 대상으로 위약금·대금환급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게 된 것.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위약금 기준(안)이 제정·시행되면 기준을 초과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방문판매법 제45조)가 되며,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지게 된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시행 중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010-1호)을 토대로 마련했다.

위약금 기준(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지급한 대금에서 '이미 제공받은 재화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부가상품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업종별 위약금 기준 〉

업종	위약금 기준
국내결혼중개업	① 서비스 개시 전 : 총 계약대금의 20% ② 1회 이상 소개 후 : 총 계약대금의 20% (잔여 횟수 / 총 횟수)
컴퓨터 통신교육업	①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② 그 외의 경우 : 총 계약대금의 10%
헬스·피트니스업	총 계약대금의 10%
미용업	① 재화 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② 그 외의 경우 : 총 계약대금의 10%
학습지업	계약 해지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 등의 단위대금의 10%

위약금 기준(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업종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 계약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위약금 과다 부과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도 가능해진다.

▣ 유통분야 최초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판매수수료 결정절차 사전 공개 등 거래조건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동반성장과 함께 분쟁소지를 예방하고 납품업체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의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사항으로는 △ 신의성실 원칙,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등 관계 법령 준수, 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노력 명시 △ 구두발주 방지를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서면계약 체결의무 명시 △ 상품대금 지급시 상품·상품권 지급 금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금지 △ 판촉사원의 인건비 등의 비용은 파견사유,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 협의해 부담 △ 사전 서면약정 후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상품·상품권 구입 강요 금지 △ 즉시 해지와 최고 후 해지 구분 등 계약해지 요건 강화 등이다.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 매장위치·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 판매수수료(마진율)는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결정·변경절차 사전공개, 새로운 계약기간 이후 마진율 미합의시 종전 마진율 적용 △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위치 변경을 금지하고 상당한 기간(1년)이 경과하지 않고 변경시 백화점이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는 △ 판매 장려금의 유형, 내용, 비율 명시 및 판매 장려금은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결정·변경절차 사전공개,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금지 △ 현행 고시에 따라 매입 상품의 오·훼손, 하자, 주문 상품과 다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품을 금지하고 반품기간은 납품업체와 합의해 결정 △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배타적 거래, 납품거래와 무관한 정보 요구, 영업비밀 누설 등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백화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은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개선 방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면서, 유통분야에 최초로 도입된 표준거래계약서인 만큼 백화점협회 및 백화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패션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납품업체 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향후 백화점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 2개사 '우수', 6개사 '양호' 등급

대·중소기업 협약 후 꾸준한 지원 노력 · 12개 대기업이 379억원 지원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8월 및 9월에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GS그룹 4개 대기업과 한화그룹 8개 대기업 등 2개 그룹 12개 대기업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해 GS칼텍스, 한화케미칼 등 2개사에 대해 '우수' 등급을, GS넥스레이션 등 6개사에 대해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 〉

평가등급 (기준점수)	기업명 (기나다, 영문순)
우수 (90점 이상)	한화케미칼, GS칼텍스
양호 (85점 이상)	드림파마, 한화, 한화건설, 한화엘앤씨, 한화테크엠, GS넥스레이션

평가대상 12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 지원, 납품단가 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3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GS칼텍스와 한화 등 대기업 8개사가 77개 협력사에 대해 총 280억 9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실적은 97개 협력사에 대해 총 98억 4천만 원으로, 이에 따라 평가대상 12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 지원, 납품단가 인상 등 총 지원 효과는 약 37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대상 기업들의 하도급대금 현금성 지급 등의 결제조건은 대부분 양호(10개사 100%)했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했으며 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을 이행했다. GS칼텍스 등 GS그룹 4개사, 한화케미칼 등 한화그룹 6개사, 총 10개사가 100% 현금성 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평가대상 12개사 중 8개사가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 및 계약서에 반영하고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것.

이번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GS칼텍스는 100% 현금결제 및 평균 대금지급기일을 6일 이내에서 5.2일 이내로 단축하고 상생협력펀드 조성으로 171억 7천만 원의 저리대출을 지원했으며, 한화케미칼은 씨티은행에 상생기금 10억 원을 출연해 총 9억 원 대출 및 현금결제비율을 23%에서 100%로 확대했다.

특히, 평가결과 '양호' 등급 미만 기업의 경우도 다양한 동반성장 지원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인정됐는데, 현금성 결제비율 우수(100%),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1억 9천만 원),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인정된다는 것. 공정위는 '양호 등급'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재협약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기업의 명단은 협약절차기준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 조사 결과 공표

정유, 승용차, 라면, 맥주, 커피 등 46개 산업은 독과점이 고착화·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3조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광업·제조업 분야의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2008년 말 기준 시장구조통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2008년 시장집중도는 CR3 단순평균 기준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중평균기준으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이래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외환위기 제외)에 있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대규모기업들의 수출 호조로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구조 고착산업은 46개(2002~2006년 54개에서 감소)로, 같은 기간 상위 3사의 집중도(CR3)가 상승한 독과점구조 고착산업의 수는 20개였으며, 상위 3사의 기업구성에 변동이 없는 독과점구조 고착산업의 수는 10개였다.

독과점구조 고착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R&D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 집중도 및 중간규모출하액은 높게 나타났으며, 독과점구조 고착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2.5%로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0.2% 보다 높았다.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1.7%로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0% 보다 낮았다. 그리고 독과점구조 고착산업의 해외개방도는 27.4%로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0.2% 보다 낮았으며, 내수집중도는 67.8%로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32.1% 보다 높았다. 독과점구조 고착산업의 중간규모출하액은 1,025억 원으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154억 원보다 훨씬 높았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독과점구조 고착산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률, R&D 비율, 해외개방도, 내수집중도, 중간규모출하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맥주, 담배, 라면, 커피, 설탕, 판유리, 화약, 조미료 등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R&D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았다. 정유, 승용차 등의 경우, R&D 비율은 낮고 중간규모출하액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독과점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아 독과점구조 고착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도 일반집중도는 상위 50대, 100대 기업 모두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일반집중도는, 외환위기 당시 급등해 1998년 고점에 이른 후 하락하다가 2002년 저점을 지나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 발표

주유소, 풀사인 관계없이 값싼 기름 취급 가능해져

앞으로 주유소들이 풀사인과 관계없이 값싼 타 브랜드 제품을 선택해 구입·판매(혼합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가 정유사와 협상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거래기준(Best Practice)으로서의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 기준은 혼합판매 문제 등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지역주유소들이 거대 정유사와 휘발유·경유 등의 공급계약을 맺을 때, 자칫 불리하게 정해질 수 있는 계약상 쟁점과 관련해 바람직하고 공정한 계약방법·기준을 공정위가 제시하고 있다.

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의 폴(Pole)을 달고서도 타 브랜드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존 1:1 전속계약을 주유소가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정유사의 디브랜딩(정유사가 주유소의 폴을 철거하는 행위)이 가능한 경우를 엄격히 제한 △ 기타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품 공급 후 사후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등 주유소의 일방적인 대(對) 정유사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이 거래과정에서 적용되어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정유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기름 값이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혼합판매 주유소는 무플 주유소와 정유사에 대한 협상력이 유사하기 때문에 혼합판매가 활성화되어 혼합제품의 판매가격이 무플 주유소 수준으로 설정된다면,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20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널리 활용되어 혼합판매 주유소가 늘어날 경우, 최소한 리터당 20~30원 가량 기름 값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이 일선 주유소까지 잘 전파되어 정유사와 계약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1/4분기 중 전국적인 홍보와 함께 실제 거래 적용과정상 정유사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엄격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0년 대기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45개 민간기업집단 대상·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중은 45.6%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사외이사, 총수일가인 이사, 이사회내 위원회 및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제도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대상 집단은 2010년 4월 1일 지정된 53개 대기업집단 중 8개 공기업집단을 제외한 45개 민간기업집단이다.

구분	집 단 명	계열사 수	상장사 수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35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두산, 한화, STX, LS, CJ, 현대, 동부, 신세계, 대림, 부영, 효성, 동국제강, KCC, 한진중공업, 대한전선, OCI, 웅진, 현대백화점, 코오롱, 현대산업개발, 하이트맥주, 동양, 영풍, 미래에셋, 세아, 한국투자금융	1,085개	193개 (비금융 177, 금융 16)
동일인이 법인인 민간기업집단 (10개)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현대건설, 에스-오일, 지엠대우, 삼성테스코, 케이티앤지, 현대오일뱅크	137개	16개

공개된 정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외이사 현황(상장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2010년 4월 1일 기준 동일인이 자연인인 35개 기업집단 상장회사 1,93개사의 전체 이사 1,347명(평균 7.0명) 중 사외이사는 614명(평균 3.2명)으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5.6%였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수의 법적 최소기준을 초과한 사외이사 수는 40명(평균 0.21명)이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 기간 중 35개 기업집단 193개 상장회사가 선임한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은 86.1%였다.

동일인이 법인인 10개 민간기업집단 상장회사 16개사의 사외이사 비중은 54.1%(이사 122명 중 사외이사 66명)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45.6%) 보다 8.5%p 높은 수준이었다. 10개 기업집단 16개 상장회사가 선임한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은 94.6%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상장회사의 경우(86.1%)보다 8.5%p 높은 수준이었다.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계열회사의 비율은 28.7%(1,085개사 중 311개사)이고, 동 비율은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체 계열회사 1,085개사 중 총수일가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는 10개 기업집단 28개사(2.6%)로 모두 비상장회사였으며, 35개 기업집단의 동일인 중 1개 이상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동일인은 30명이고 이들은 평균 5개 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상장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35개 기업집단 상장회사 193개사의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만(각 59.1%, 47.7%), 보상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 비중은 저조한 수준(각 7.3%, 8.3%)이었다. 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감사위원회(95.3%), 내부거래위원회(91.2%), 보상위원회(8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65.8%) 순이었다.

▣ 지주회사 등의 현황 분석·발표

지난 1년간 17개사 순증·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16개에서 22개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난 1년간 24개사가 신규 설립·전환하고 7개사가 제외되어 17개사가 순증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21.5%가 증가한 96개사가 규모다. 이중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6개가 순증(7개사 신규 설립·전환, 1개사 제외)해 전년 대비 37.5% 증가한 22개사였다. 2010년 9월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일반 84개, 금융 12개 등 총 96개사로, 지난 1년간 일반 21개, 금융 3개 등 총 24개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2010. 9. 30. 현재) 〉

구분	지주회사 수	자회사 수	손자회사 수	증손회사 수	합계
일반지주회사	84(46)	457(100)	370(22)	31(0)	942(168)
금융지주회사	12(5)	73(5)	53(2)	7(0)	145(12)
계	96(51)	530(105)	423(24)	38(0)	1,087(180)

부채비율은 일반지주회사는 54.9%, 금융지주회사는 19.0%로 법상 규제기준(200% 이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분율은 일반·금융지주회사 모두 법상 지분율 요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 자회사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손자회사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전환이 증가하면서 손자회사 수는 다소 증가했다.

계열사의 지주회사내 편입율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약 71.6%가 지주회사 체제 내에 포함됐는데, 주력회사가 지주회사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평균 78.4%로, 계열사의 지주회사 내 편입율이 높은 편이었다. 동일인 지분율은 일반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율은 평균 29.1%(상장 22.9%, 비상장 39.2%), 친족지분을 포함한 동일인일가 지분율은 평균 46.6%(상장 38.7%, 비상장 59.1%)로, 주력회사가 지주회사인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 동일인 지분율은 평균 21.9%, 동일인일가 지분율은 평균 40.2%였다.

지주회사 관련 요건 미충족에 대해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는 지주회사 등은 법상 금지된 금융사 주식을 보유한 15개 지주회사 등 88개사로, 이 중 올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회사는 23개사이며, 36개사는 11년도에, 29개사는 12년도에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허용된 지 11년이 경과하면서 지주회사체제가 국내 대기업집단 기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순·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와 기업경영에 있어서 지주회사체제의 장점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당초 지주회사 허용시 우려와는 달리 지주회사 체제가 부채 조달 및 적은 지분을 통한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2010년 11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지난달 1348개와 동일

2010년 12월 1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52개의 소속회사 수는 1,348개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 2010년 11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0. 11.1	편 입				제 외							증감	2010. 12.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52개)	1,348	5	3	3	11	4	1	3	-	-	3	11	-	1,348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7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총 11개 소속회사가 증가했다.

△ 회사 설립은 5개로 {삼성 : 오픈한즈(주) / 에스케이 : (주)에베헬스케이 / 지에스 : (주)엔씨타스 / 코오롱 : 춘천맑은물길(주)} 등이다.

△ 지분 취득은 3개로 {삼성 : (주)테크윈에코 / 롯데 : 데크항공(주) / 지에스 : 새한미디어(주)} 였으며 △ 기타로는 {엘지 : 미래세움(주) / 지에스 : 새한정보시스템(주) / 새한전자(주)} 등 3개였다.

제외내역을 살펴보면, 9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총 11개 소속회사가 감소됐다.

△ 흡수합병은 {에스케이 : 티유미디어(주) / 한화 : (주)마이크로에어로봇} 등 4개 △ 지분 매각은 {대한전선 : 다산태양광발전(주)} 1개 △ 청산 종결은 {한진 : (주)에이몰 / 엘에스 : (주)카보닉스} 등 3개 △ 기타로는 {포스코 : 청정김포(주) / 현대건설 : 미래세움(주)} 등 3개였다.

▣ 2010년 12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1개 소속회사 수 지난달보다 2개 회사 증가

2011년 1월 3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51개의 소속회사 수는 편입 21개, 제외 19개를 포함한 1,350개로 지난달 1,348개에 비해 2개 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소속회사들의 계열 제외로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음에 따라 지정 제외되어 기업집단의 수가 52개에서 51개로 감소됐다.

〈 2010년 12월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

기업집단	2010. 12.1	편 입				제 외							총합	2011. 1.3.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친족 분리	지정 제외	기타	계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51개)	1,348	11	8	2	21	6	5	1	-	1	6	19	2	1,350

편입내역을 살펴보면, 17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 등으로 총 21개 소속회사 증가했다.

△ 회사 설립 11개 {삼성 : 에스원씨알앤(주) / 롯데 : (주)블리스} 등 △ 지분 취득 8개 {삼성 : 이엑스이씨엔티(주) / 엘지 : (주)이미지앤머티리얼스} 등 △ 기타 2개 {삼성 : 한국이엑스이테크놀러지(주)} 등이다.

제외내역을 살펴보면, 14개 집단에서 계열사 흡수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총 19개 소속회사가 감소했다.

△ 흡수합병 6개 {삼성 : (주)테크윈에코 / 두산 : 두산메카텍(주)} 등 △ 지분 매각 5개 {케이티 : (주)디앤지스타 / 두산 : 삼화왕관(주)} 등 △ 청산 종결 1개 {에스케이 : 에스케이씨미디어(주)} △ 지정 제외 1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기타 6개 {지에스 : 새한전자(주) / 케이씨씨 : 상아탑(주)} 등이었다.

▣ 제1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공정한 시장, 현명한 소비자’와 함께하는 소비자의 날

제15회 ‘소비자의 날’ 행사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기업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개인 72건, 단체 11건 등 총 83건에 대한 포상이 실시됐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오영희 한국소비자연맹 전남·목포소비자연맹회장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30년간 재직하다 소비자운동에 투신하고자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1988년 전남목포소비자연맹을 창립, 72세인 지금까지도 노인 소비자교육을 전담하는 등 발로 뛰는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와 이은희 인하대 교수는 포장을, 강창경 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등 10건은 대통령 표창을, 서울우유협동조합 박병건 등 9건은 국무총리 표창을, 강원도 등 61건은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 동영상도 상영됐는데, 소비자단체, 공정위, 소비자원 등 소비자업무 추진주체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주요활동실적과 성과들이 소개됐으며,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금융·보험 분야의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 고령 소비자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소비자들의 경험 및 요구사항을 담은 소비자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되기도 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장 임명

공정위원장 역임·소비자문제 해결 위한 각종 대안 제시 연구활동 활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장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대 민간위원장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각 부처의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정위에 설치된 위원회로, 민간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김인호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1993.4.~1994.8.), 공정거래위원장(1996.3.~1997.2.),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1997.3.~1997.11.)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신임 김인호 위원장은 다양한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시장원리에 입각해 한국경제와 소비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각 분야에 걸친 집필 및 기고, 강연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 공정위 인사 동향 2010. 11. 9. ~ 2011. 2. 15.

2010. 11. 9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남기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1. 10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실무수습) 7급 전산 직 실무수습원 박영민**
전산주사보에 임함.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11. 11.

◎ **법제처 행정사무관 이택길**
공정거래위원회 전입을 명함. 기획조정관실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공정거래위원회 토목사무관 정재득**
휴직복직을 명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지원 근무를 명함(기간:2010.11.11.~별도발령시까지).

11. 18.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유성욱**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지원근무를 해제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실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2010.11.18.~2011.10.17.).

11. 22.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행정주사보 이창욱**
국가공무원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질병)휴직을 명함(기간:2010.11.22.~2010.12.31.).

12. 1.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행정사무관 이동미**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와 지원근무 연장을 명함(기간:2010.12.1.~2010.12.15.).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주사 민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0.12.1.~별도발령시까지).

12. 6.

◎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행정사무관 박국연**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10.12.6.~2011.11.30.).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김현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육아)휴직 연장을 명함(연장기간:2010.12.15.~2011.2.6.).

12. 8.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김영철**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행정주사 윤영술**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2010년도 국비장기 국외훈련계획에 의거 네덜란드, Twente University 파견근무를 명함 (파견기간:2010.12.15.~2012.1.14.).

12. 10.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수진**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해제함. 행정안전부 주관 2010년도 국외단기 개인훈련계획에 의거 중국, 상해화동정법대학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2010.12.13.~2011.6.9.).

12. 15.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편유림**
2010년도 장기일반과정 국외훈련계획에 의거 아르헨티나, Universidad de Belgrano 파견근무를 명함(파견기간:2010.12.16.~2011.12.15.).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주사보 김현수**
행정주사에 임함.

12. 16.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신영호**
대통령실 전출을 명함.

12. 20.

- ◎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기능8급(사무실무원) 신창숙**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 ◎ **운영지원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정정란**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감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기능8급(사무실무원) 성복용**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이순형**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 ◎ **운영지원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강연주**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 ◎ **운영지원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윤은숙**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근무를 명함.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최선아**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근무를 명함.

- ◎ **종합상담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이영미**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근무를 명함.
- ◎ **감사담당관실 기능8급(사무실무원) 한정희**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 ◎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추미라**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이극숙**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김현주**
행정서기(시보)에 임함.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최정희**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노현숙**
종합상담과 근무를 명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윤여순**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기능8급(사무실무원) 오은주**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근무를 명함.
- ◎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기능7급(사무실무장) 김영임**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근무를 명함.

12. 27.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서기 나애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면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행정서기 김미영**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근무를 명함.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 입함.
- ◎ **7급(행정) 채용후보자 김준홍**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시보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기간:2010.12.27.~별도발령시까지).
- ◎ **7급(행정) 채용후보자 김종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시보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기간:2010.12.27.~별도발령시까지).
- ◎ **7급(행정) 채용후보자 강은호**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시보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기간:2010.12.27.~별도발령시까지).
- ◎ **7급(행정) 채용후보자 신희옥**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시보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기간:2010.12.27.~별도발령시까지).
- ◎ **7급(행정) 채용후보자 장미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시보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기간:2010.12.27.~별도발령시까지).
- ◎ **7급(행정) 채용후보자 권순길**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시보임용전 실무수습을 명함(기간:2010.12.27.~별도발령시까지).

12. 31.

- ◎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김인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

2011. 1. 1.

- ◎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행정사무관 최영선**
국방부 전출을 명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사무관 김주연**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육아휴직)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기간:2011.1.1.~2011.6.30.).

1. 3.

-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2011.1.3.~2014.1.2.).
-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함(2011.1.3.~2014.1.2.).
-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별정직고위공무원 정재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통령.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석동수**
복직을 명함.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최인수**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김재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근무를 명함.
-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행정사무관 김도업**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실 파견근무를 명함(기간:2011.1.3.~2011.12.31.).

1. 5.

- ◎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장득수**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통령.

1. 7.

- ◎ **소비자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철수**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명함.
(기간:2011.1.7.~별도발령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재중**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에 보함.
-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중원**
카르텔조사국장에 보함.
- ◎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성하**
기업협력국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신동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보함.
- ◎ **사무처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상용**
- ◎ **시장감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영호**
- ◎ **카르텔조사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석호**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덕진**
- ◎ **기업협력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준**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2011.01.07.~2011.03.31.).
- ◎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장 부이사관 곽세봉**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대변인 직무대리를 명함(기간:2010.1.7.~별도발령시까지).
- ◎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 서기관 강재영**
부이사관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2011.1.7.~2011.12.31.).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 서기관 송상민**
부이사관에 임함.
- ◎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박기홍**
- ◎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행정사무관 김신영**
- ◎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행정사무관 왕일상**
서기관에 임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김백환**
행정사무관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용만**
행정사무관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와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전산주사 민성환**
전산사무관에 임함.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성태**
행정사무관에 임함.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지원 근무를 해제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실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2011.1.7.~2011.12.31.).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이송규**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2011.1.7.~2011.12.31.).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기관 나양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행정주사보 박운정**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행정주사보 정인태**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행정주사보 김진용**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행정주사보 남상우**
행정주사보에 임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김종민**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근무를 명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강은호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실무수습) 7급 행정직 실무수습원 권순길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근무를 명함.

1. 10.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선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육아휴직)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기간:2011.01.10.~2012.01.09.).
- ◎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행정주사 김주영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를 해제함.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 ◎ 심판관리관실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 행정주사 박정용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1.10.~별도발령시까지).
- ◎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행정주사 이원열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근무를 명함.

1. 11.

- ◎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서기관 김맹규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1.11.~별도발령시까지).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기관 한철기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
(기간:2011.1.11.~별도발령시까지).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이미옥
복직을 명함.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1.11.~별도발령시까지).

1. 14.

- ◎ 안영호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포함(2011.1.14.~2014.1.13.).
- ◎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영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통령.
-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주사 원성연
복직을 명함.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지원근무를 명함(기간:2011.1.14.~별도발령시까지).

1. 31.

- ◎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부이사관 김형배
감사담당관에 보함.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 부이사관 채규하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에 보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서기관 배영수
심판관리관실 경쟁심판담당관에 보함.
- ◎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 서기관 김호태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에 보함.
- ◎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장 서기관 김만환
운영지원과장에 보함.
- ◎ 운영지원과 서기관 유종근
종합상담과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김운수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장에 보함.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서기관 이동원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장에 보함.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서기관 김성근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제분석과장에 보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최무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에 보함.
- ◎ 시장감사국 서비스업감사과장 서기관 고병희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장에 보함.

-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구조개선과
서기관 성경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에 포함.
-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제분석과장
서기관 노상섭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에 포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서기관 권철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에 포함.
-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장
서기관 김준하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에 포함.
- ◎ 심판관리관실 협력심판담당관 서기관 윤수현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장에 포함.
- ◎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 서기관 정진욱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장에 포함.
-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장 부이사관 김성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에 포함.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서기관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에 포함.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서기관
김관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에 포함.
- ◎ 감사담당관 서기관 박원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에 포함.
-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서기관 조규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포함.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기관 김이균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포함.
-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한철기
대구지방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포함.
- ◎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장 부이사관 임은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에 포함.
-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서기관 장장이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1부단장에 포함.
- ◎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배진철
- ◎ 종합상담과장 서기관 서남교

- ◎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준범
-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서기관 강신민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기관 권영익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
- ◎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서기관 박제현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이경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 포함.

2. 15.

- ◎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권영익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포함.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기관 이영일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명함.